#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138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 강경숙·서왕진·신장식

김선민 · 김재원 · 황운하

정춘생 · 김준형 · 차규근

이해민 • 백선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충격에 빠졌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후 한 번 개최되기도 함.

이에,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3(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질환교원의 근무 적합성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의 질환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 1.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교원
  - ③ 교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고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4조의3(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질환교원의
	근무 적합성 여부를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
	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
	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u>한다)를 둔다.</u>
	② 제1항의 질환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u>는 교원</u>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
	항제4호에 해당하는 교원
	③ 교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
	하고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